

광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60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605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5078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곽민섭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오진욱, 이정훈

변론 종결 2020. 1. 15.

판결 선고 2020. 2. 1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5078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21. 접수 제13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21. 접수 제13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혜원

판사조현호

판사이양희

별지